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         |
|---|---------|
| 선 | 기 관 의 장 |
| 람 |         |



제 498 호

2003 년 2 월 5 일 수요일

## 차 례

### 조 례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79호(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3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80호(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 4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81호(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5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82호(인천광역시남동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 8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83호(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10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84호(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중개정조례)----- 13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85호(인천광역시남동구공원운동장관리및운영조례)----- 16

### 규 칙

-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577호(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26

### 훈 령

- 인천광역시남동구훈령 제183호(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규정중개정규정)- 28
- 인천광역시남동구훈령 제184호(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자료실운영관리규정중개정규정)-- 30

### 공 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60호(용역제입찰공고(도립토지구획정리사업폐기물처리용역))- 32
-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공고 제2003-2호(한방의약품구매입찰공고)----- 34

|        |  |  |  |  |  |  |  |  |
|--------|--|--|--|--|--|--|--|--|
| 회<br>람 |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문화홍보실



|   |   |
|---|---|
| 조 | 례 |
|---|---|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3. 2. 5.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79호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제7호 “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 을 삭제 한다.

제6조중 제7호 다음 “제8호” 를 다음과 같이 삽입하고, “제8호 내지 제12호” 를 “ 제9호 내지 제13호 ” 로 한다.

8.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사유

지방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능상의 유사 업무를 통합 조정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능률성을 제고 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선진 지방자치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 ○ 주요골자

- 기획감사실의 분장 사무중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을 삭제 함(제4조 제7호)
- 총무국내의 분장 사무중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6조 제8호)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3. 2. 5.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80호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별표1 내지 별표3의 위임사무중 “물품불용 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에 대한 실과별란의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사유

지방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일부 부서의 사무분장 재조정과 관련하여 부서의 위임 사무를 해당부서와 일치시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함.

### ○ 주요골자

보건소장 및 출장소장,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총무과의 “물품 불용결정에 관한 권한”의 위임사무를 자치행정과로 조정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3. 2. 5.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81호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위원회의 구성) 제1항중 “단, 공단의 신규설립에 따른 이사장후보 추천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외한다”를 “다만, 공단을 설립하는 때에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4인,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동조동항 제2호중 “3인”을 “2인”으로 하고, 동조동항 제3호중 “2인”을 “3인”으로 하며,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여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구청장은 이사장의 임기만료, 기타의 사유로 이사장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해당기관에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의 결격사유 등)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단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구 공무원(구의회 의원을 포함한다)

제22조(이사장후보 추천) 제2항중 “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이사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며”를 “위원회가 이사장후보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하며”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이사장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목적사업)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쓰레기봉투 대행판매 사업

제27조(예산)에 제4항 내지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구청장은 제3항에 의해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산에 관한 공통지침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동법 및 영에서 위임된 사항을  
개선·보완코자 함.

○ 주요골자

· 제17조 제1항(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을 2인으로 공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을 3인으로 하고, 공단의 신규 설립시에는 구청장이 4인, 구의회가 3인을 추  
천·구성

· 제17조 제2항(위원회 위원의 자격)

민간 경영전문가, 지역경제나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4급이상으로 퇴직한 공  
무원, 공인회계사 및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추천

· 제19조(위원의 결격사유)

비상임 이사를 제외한 공단의 임직원 및 구 공무원, 구의회 의원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

· 제22조(이사장후보 추천)

당초 복수로 추천토록 하던 것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토  
록 규정

· 제23조(목적사업)

쓰레기봉투 대행사업을 추가함.

· 제27조(예산)

구청장은 공단 이사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 제66조의 규  
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이사장은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 의결을 받  
도록 함.

\*\*\*\*\*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3. 2. 5.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82호

### 인천광역시남동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구민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수상부문)본문중 “5인 이내로 한다”를 “다음과 같다”로 한다.

동조 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회봉사상 1명
3. 문화예술상 1명
4. 교육·체육상 1명
5. 산업진흥상 1명

동조 제2호중 “1인이내”를 “1명”으로 하며,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대민봉사상 1명

제3조(수상대상자)중 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1. 사회봉사상 : 사회 각분야에서 주민화합등 지역사회 봉사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자
3. 문화예술상 : 문화예술분야(서예, 미술, 음악등) 발전 및 지역 문화창달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4. 교육·체육상 : 교육 및 체육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자와  
구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위상을 드높인 자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대민봉사상 : 투철한 공직관과 준법정신으로 대민봉사에  
헌신한 공무원 (단, 구산하 공무원은 제외)

제4조중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회봉사상 : 각 동장 또는 각급기관, 사회단체장
2. 효 행 상 : 각 동장
3. 문화예술상 : 각 동장 또는 추천대상자 소속기관 및 단체장
4. 교육·체육상 : 각 동장 또는 추천대상자 소속기관 및 단체장
5. 산업진흥상 : 각 동장 또는 추천대상자 관련기관 및 단체장
6. 대민봉사상 : 각 동장 또는 추천대상자 관련기관장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

-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구민상 수상부분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여 실질적 공적 및 시상이 필요한 부문으로 조정하여 구민상의 위상을 드높임은 물론 사회각층에서 지역사회발전에 공헌이 있는 후보자를 발굴토록 하기 위함.

### ○ 주요골자

- 문화예술부분과 교육·체육부분을 각 1명씩으로 확대(제2조)
- 투철한 사명감과 대민봉사 정신이 뚜렷한 모범 공직자 수상부문 신설(제2조)
- 부문별 수상후보자 자격 요건 정비(제3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3. 2. 5.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83호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요율)관련 [별표1]의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중 제2호 문화공보관계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

2001. 12. 31. 공연법 개정 및 2002. 1. 26 영화진흥법 개정 시행으로 통합관리되던 공연장과 영화상영관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공연장 등록(변경등록) 및 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항목을 신설하고 현실에 맞게 정비함.

## ○ 주요골자

- 2001. 12. 31 공연법 개정에 따라 공연장업 등록(변경등록)이 공연장 등록(변경등록)으로 변경되고, 그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제3조 관련 별표1중 2. 문화공보관계 (1)~(2))
- 공연법에 의거 공연장업으로 등록·관리되던 “영화상영관”이 2002. 1. 26 영화진흥법 개정에 따라 공연장업에서 분리되어 영화 상영관 등록대상이 됨에 따라 수수료 항목 신설(제3조 관련 별표1중 2. 문화공보관계 (3)~(4))

【별표1】

## 제 증 명 등 수 수 료

| 구 분                                                    | 기 준 | 요 액     | 비고 |
|--------------------------------------------------------|-----|---------|----|
|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     |         |    |
| 2. 문화공보관계                                              |     |         |    |
| (1) 공연장 등록                                             | 1건  | 20,000원 |    |
| (2) 공연장 변경등록                                           | 1건  | 10,000원 |    |
| (3) 영화상영관 등록                                           | 1건  | 20,000원 |    |
| (4)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 1건  | 10,000원 |    |
| (5) 유통관련업 등록(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제공업)      | 1건  | 25,000원 |    |
| (6) 유통관련업 등록사항 변경(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제공업) | 1건  | 15,000원 |    |
| (7) 유통관련업 신고(복합유통·제공업)                                 | 1건  | 20,000원 |    |
| (8) 유통관련업 신고사항 변경(복합유통·제공업)                            | 1건  | 10,000원 |    |
| (9) 유원시설업 허가                                           | 1건  | 60,000원 |    |
| (10)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변경신고)                             | 1건  | 30,000원 |    |
| (11) 기타 유원시설업 영업신고                                     | 1건  | 30,000원 |    |
| (12)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 사항 변경신고                               | 1건  | 15,000원 |    |
| (13)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                                    | 1건  | 5,000원  |    |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예관한조레중개정조레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3. 2. 5.

인천광역시남동구조레 제684호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예관한조레중개정조레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예관한조레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관련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에 따른 3ℓ쓰레기봉투의 사용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2001. 2월 봉투가격 인상시 3ℓ쓰레기봉투가격이 미조정된 사항을 보완하여 5ℓ 이상 쓰레기 봉투가격과의 편차를 줄이고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한 봉투가격을 현실화함.

## ○ 주요골자

제 10조 제3항 별표4

: 3ℓ 음식물쓰레기 봉투가격 인상 : 70원 → 90원

(별표4) 폐기물봉투의 규격·용도 및 가격(제10조 제3항 관련)

| 봉투용량<br>(ℓ)   | 봉투규격<br>(가로 ×<br>세로,cm) | 가격(원) | 용도               |
|---------------|-------------------------|-------|------------------|
| 3             | 22 × 26                 | 90    |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일반용봉투 |
| 5             | 26 × 31                 | 160   |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일반용봉투 |
| 10            | 33 × 40                 | 310   |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일반용봉투 |
| 20            | 41 × 49                 | 620   |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일반용봉투 |
| 50            | 56 × 67                 | 1,540 | 공공용봉투,일반용봉투      |
| 100           | 71 × 85                 | 3,070 | 공공용봉투,일반용봉투      |
| 30<br>(12kg)  | 48 × 57                 | 2,350 | 가정사업계봉투          |
| 60<br>(24kg)  | 60 × 69                 | 4,700 | 가정사업계봉투          |
| 125<br>(50kg) | 80 × 90                 | 7,870 | 가정사업계봉투          |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공원운동장관리및운영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3. 2. 5.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85호

### 인천광역시남동구공원운동장관리및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체육 활동의 확장을 조성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원운동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운동장"이라 함은 남동공단 근린공원, 구월근린공원 내 운동장을 말하며 육상경기장, 축구장, 본부석, 스탠드(벤치)등을 말한다.
- 2."시설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운동장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거나 중계방송, 광고게시, 공연, 관람 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
- 3."사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등을 위하여 운동장 및 부대시설 전체를 사용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사용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운동장을 단체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시설, 사용 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을 명시하여 사용일 7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신청기일을 줄일 수 있다

③개인이 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운동장 사용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명할 수 있다

1. 남동구 경.조 행사 등
2. 남동구 구민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남동구 관내의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이외의 공연, 전람, 전시 등 문화행사
7.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각종행사

제5조(시설의 개방) ①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동장을 연중 체육 활동장으로 개방한다.

②구청장은 운동장의 활용상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제고를 위한 홍보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시간) ① 운동장의 일일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조기: 05:00 ~ 08:00 까지 (동계06:00 ~ 09:00까지)

주간: 08:00 ~ 19:00 까지 (동계09:00 ~ 18:00까지)

야간: 19:00 ~ 23:00 까지 (동계18:00 ~ 23:00까지)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제7조(사용료) ①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운동장의 사용료는 운동장, 부대시설사용 등으로 구분하며 별표 1내지 3과 같다

③운동장의 사용료는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해 납부한다.

제8조(사용료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민을 위한 경. 조 행사 및 각종 경기대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3.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익행사.

제9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않는다

1. 운동장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3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50/100을 반환.
2. 운동장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에 있어서는 연장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의 전액반환.
3. 우천이나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운동장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반환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등기타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운동장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제1항의 처분에 의한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양도 및 전대금지) ①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허가사항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2조(손해배상) ①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운동장 및 부대 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3조(운동장의 관리) 구청장은 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지제3호 서식을 비치관리 하여야 하며, 구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인을 배치할 수 있다

제14조(위탁관리)①운동장의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동장의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 구청장은 위탁자에게 운동장 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안이유

- 우리구에서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원운동장에 대하여 그 동안 경제적 부담없이 구민 및 시민에게 무료로 사용토록 하여 체력 증진에 기여하여 왔으나 이용자들의 무분별한 시설물사용에 따른 시설물 파손이 우려됨에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 일부 특정인(단체)들만 공원 내 운동장을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공평한 사용기회 제공이 어려워 이에 현 운동장 사용을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여 균등한 사용기회를 제공함.

## ○ 주요골자

- 조례상의 “운동장”범위 및 시설사용에서의 사용범위, 사용자 및 이용자 등 정의(제2조)
- 사용허가 신청방법 명시(제3조)
- 사용료의 납부 및 사용료 면제 대상 명시(제7조, 제8조)
-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동장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인 배치 및 위탁 관리할 수 있다(제13조, 제14조)

## 【 별표 1】

## 남동구 공원 운동장 사용료

| 사용구분 | 체 육 경 기 |        | 체 육 경 기 외 |         | 비 고          |
|------|---------|--------|-----------|---------|--------------|
|      | 평 일     | 공 휴 일  | 평 일       | 공 휴 일   |              |
| 주 간  | 50,000  | 70,000 | 100,000   | 130,000 |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 |

## 【 별표 2】

## 부대시설 사용료

| 사용구분    | 사 용 료<br>( 평 일 ) | 비 고          |
|---------|------------------|--------------|
| 전기및방송시설 | 30,000           |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 |

## 【 별표 3】

## 오전, 오후 사용료

| 사용구분              | 사 용 료<br>( 평 일 ) | 사 용 료<br>( 공휴일 ) | 비 고          |
|-------------------|------------------|------------------|--------------|
| 2 시간 이상사용(오전, 오후) | 20,000           | 30,000           |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 |

【별지 제1호서식】

공원운동장사용(시설)신청서

|        |                                                                                                                                                                                                                                                                                                                                                                                             |   |        |   |
|--------|---------------------------------------------------------------------------------------------------------------------------------------------------------------------------------------------------------------------------------------------------------------------------------------------------------------------------------------------------------------------------------------------|---|--------|---|
| 신청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 전화번호   |   |
| 공원운동장명 |                                                                                                                                                                                                                                                                                                                                                                                             |   |        |   |
| 사용시설물  |                                                                                                                                                                                                                                                                                                                                                                                             |   |        |   |
| 사용목적   |                                                                                                                                                                                                                                                                                                                                                                                             |   |        |   |
| 사용 일시  | 200                                                                                                                                                                                                                                                                                                                                                                                         | 년 | 월      | 일 |
|        | :                                                                                                                                                                                                                                                                                                                                                                                           |   |        |   |
| 사용 인원  | 200                                                                                                                                                                                                                                                                                                                                                                                         | 년 | 월      | 일 |
|        | :                                                                                                                                                                                                                                                                                                                                                                                           |   |        |   |
| 부대시설   |                                                                                                                                                                                                                                                                                                                                                                                             |   |        |   |
| 사 용 료  |                                                                                                                                                                                                                                                                                                                                                                                             |   |        |   |
| 허가조건   | 1. 공원운동장을 사용함에 있어 발생된 부대시설물 파손을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및 그 손해를 즉시 보상하여야 한다.<br>2.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br>3. 공원운동장을 사용함에 있어 발생된 쓰레기는 자체수거하여 남동구쓰레기 규격봉투에 담아 일정한 장소에 모아두어야 한다.<br>4. 공원운동장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시 그 허가는 무효로 한다<br>5. 신청자의 과실로 인하여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br>(단, 천재지변은 제외)<br>6.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될 때, 상기사항을 지키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한다 |   |        |   |

남동구 공원운동장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    |    |        |
|-----|----|----|--------|
| 담당자 | 담당 | 과장 | 결<br>재 |
|     |    |    |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 【별지 제2호서식】

## 공원운동장사용(시설)허가서

|                                                                                                                                                                                                                                                                                                                                                                                                                             |     |   |        |   |
|-----------------------------------------------------------------------------------------------------------------------------------------------------------------------------------------------------------------------------------------------------------------------------------------------------------------------------------------------------------------------------------------------------------------------------|-----|---|--------|---|
| 신청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전화번호 ☎ |   |
| 공원운동장명                                                                                                                                                                                                                                                                                                                                                                                                                      |     |   |        |   |
| 사용시설물                                                                                                                                                                                                                                                                                                                                                                                                                       |     |   |        |   |
| 사용목적                                                                                                                                                                                                                                                                                                                                                                                                                        |     |   |        |   |
| 사용 일시                                                                                                                                                                                                                                                                                                                                                                                                                       | 200 | 년 | 월      | 일 |
|                                                                                                                                                                                                                                                                                                                                                                                                                             | 200 | 년 | 월      | 일 |
| : 부터                                                                                                                                                                                                                                                                                                                                                                                                                        |     |   |        |   |
| : 까 지                                                                                                                                                                                                                                                                                                                                                                                                                       |     |   |        |   |
| 사용인원                                                                                                                                                                                                                                                                                                                                                                                                                        |     |   |        |   |
| 부대시설                                                                                                                                                                                                                                                                                                                                                                                                                        |     |   |        |   |
| 사 용 료                                                                                                                                                                                                                                                                                                                                                                                                                       |     |   |        |   |
| <p>허가조건 1. 공원운동장을 사용함에 있어 발생된 부대시설물 파손을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및 그 손해를 즉시 보상하여야 한다.</p> <p>2.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p> <p>3. 공원운동장을 사용함에 있어 발생된 쓰레기는 자체수거하여 남동구쓰레기 규격봉투에 담아 일정한 장소에 모아두어야 한다.</p> <p>4. 공원운동장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시 그 허가는 무효로 한다</p> <p>5. 신청자의 과실로 인하여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br/>(단, 천재지변은 제외)</p> <p>6.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될 때 상기사항을 지키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한다</p> |     |   |        |   |

남동구 공원운동장 사용을 위와 같이 허가 합니다.

200    년                    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별지 제4호서식)

## 공원운동장사용납부통지서

(개인통지용)

|               |      |            |    |
|---------------|------|------------|----|
| 제 호           | 회계년도 | 200        | 년도 |
| 세입과목 공원운동장사용료 |      |            |    |
| 납 부 의무자       | 성 명  |            |    |
|               | 주 소  |            |    |
| 사용료금액         |      |            |    |
| 사용운동장         |      | 월 일 시부터 까지 |    |

위 사용료는 운동장사용료 제7조 규정에 의거 200 년 월 일 까지 남동구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

## 공원운동장사용납부서

(수납 은행보편용)

|               |      |            |    |
|---------------|------|------------|----|
| 제 호           | 회계년도 | 200        | 년도 |
| 세입과목 공원운동장사용료 |      |            |    |
| 납 부 의무자       | 성 명  |            |    |
|               | 주 소  |            |    |
| 사용료 금액        |      |            |    |
| 사 용 운동장       |      | 월 일 시부터 까지 |    |

위의 금액을 납부 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부인

(인)

## 공원운동장사용영수필지서

(남동구청보편용)

|               |      |            |    |
|---------------|------|------------|----|
| 제 호           | 회계년도 | 200        | 년도 |
| 세입과목 공원운동장사용료 |      |            |    |
| 납 부 의무자       | 성 명  |            |    |
|               | 주 소  |            |    |
| 사용료 금액        |      |            |    |
| 사 용 운동장       |      | 월 일 시부터 까지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부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 공원운동장사용납부통지서

(개인통지영수증)

|               |      |            |    |
|---------------|------|------------|----|
| 제 호           | 회계년도 | 200        | 년도 |
| 세입과목 공원운동장사용료 |      |            |    |
| 납 부 의무자       | 성 명  |            |    |
|               | 주 소  |            |    |
| 사용료 금액        |      |            |    |
| 사 용 운동장       |      | 월 일 시부터 까지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부인

취급자  
(인)

※ 세외수입, 임시적외수입, 잡수입, 기타잡수입, 공원운동장 사용료.

|   |   |
|---|---|
| 규 | 칙 |
|---|---|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3. 2. 5.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577호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별표1중 기획감사실의 분장사무 “제62호 내지 제72호”를 삭제하고 총무과의 분장 사무중 “제44호 내지 제5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4. 행정전화 시설 운영 유지관리
45. 구본청 및 산하기관의 통신시설 개발 및 관리
46. 통신회선 등의 통합관리
47. 교환 및 모사전송기, 동보 FAX시설 운영 관리
48. 통신 보안에 관한 사항
49. 행정 방송 시설 운영 관리
50. 통신에 관한 주택건설 승인 협의
51. 데이터 통신장비 운영 및 회선관리
52. 통신기술 교육 및 통신공사 감독수행
53. 무선국 운영에 관한 사항
54. 기타 행정 통신에 관한 업무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개정이유
- 조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부서간의 사무 분장의 조정에 의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지방 행정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신속히 대처함은 물론 행정운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선진 지방 자치행정을 구현코자 함.
- 주요골자
- 구본청에 두는 실·과의 분장 사무중 기획감사실의 “통신에 관한 사무”를 총무과로 조정(제8조 별표1)
- \*\*\*\*\*

## 훈 령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규정중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3. 2. 5.

인천광역시남동구훈령 제183호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규정중개정규정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별표1의 기획감사실의 정원중 “일반직 2명(통신6급1, 통신·전자통신7급1)” 과 “기능직 3명(교환9급1,교환10급1,조무(조무)10급1)” 을 총무과의 정원으로 상계 조정 한다.

제2조제1항중 별표5의 간석1동의 정원중 “일반직1명(행정9급1)” 을 “기능직 1명(조무(조무)10급1)” 로 하고, 만수4동의 정원중 “기능직1명(조무(조무) 10급1)”을 “일반직1명(행정9급1)” 로 하며, 만수6동의 정원중 “기능직1명 (조무(조무)10급1)”을 “일반직1명(행정9급1)” 로 하고, 장수서창동의 정원 중 “일반직1명(행정9급1)”을 “기능직1명(조무(조무)10급1)”으로 조정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

부서간의 적정한 분장 사무와 균형 유지를 위한 기능 중심의 생산적인 조직운영으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구본청의 실과별 일부 분장 사무 조정에 의한 정원의 적의 조정으로 인력운영의 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 주요골자

- 기획감사실의 정원 “34”를 “29”로 하고, 총무과의 정원 “24”을 “29”로 조정(제2조중 별표1)
- 간석1동 및 장수서창동의 각각 정원중 “일반직 행정9급1”을 만수4동 및 만수6동의 각각 정원중 “기능직 조무(조무)1”로 상계 조정(제2조중 별표5)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자료실운영관리규정중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3. 2. 5.

인천광역시남동구훈령 제184호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자료실운영관리규정중개정규정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자료실운영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3호를 삭제한다.

제13조중 제1항을 본문으로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

제14조중 제1항의 “반납하여야 하며,”를 “반납하여야 한다.”로 하고, “이동도서관에서는 반납할 도서를 도서대출카드와 함께 근무직원에게 제시하여 도서대출카드에 반납확인을 받아야 한다.”를 삭제한다.

제19조(이동도서관장서구성)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

- 구민독서저변확대와 구민의 문화정서함양으로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을 위하여 그동안 이동도서관운동을 시행하여 왔으나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내 자치문고(만수4동, 만수6동, 남촌도림동), 자율문고(간석2동, 장수서창동)운영, 인근의 유료도서대여점등이 늘고 있어 도서대여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2000년 27,243권/2001년 19,114권/ 2002년 10,678권) 운영상의 실효성이 떨어짐에 따라 이동도서관 운영을 폐지함.

## ○ 주요골자

- 이동도서관 운영을 삭제(제2조)
- 이동도서관 열람시간을 삭제(제13조)
- 이동도서의 반납에 관한 사항을 삭제(제14조)
- 이동도서관 장서구성에 관한 사항을 삭제(제19조)

|   |   |
|---|---|
| 공 | 고 |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60호

### 용역재입찰공고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도림토지구획정리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나. 용역금액 ○ 287,795,610원(부가세포함)

※ 폐기물반입수수료(수도권매립지) 7,958,500원은 계약시 계상함.

다. 용역내용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249번지 일원

※ 폐기물처리 19,685톤 [재활용 19,135톤, 매립 550톤]

라. 입찰서 및 협정서제출기간 : 2003년 2월 5일(수) 09:00 ~ 2003년 2월 10일(월) 10:00

마. 입찰집행일시 : 2003년 2월 10일 10:30(월)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바. 설계도서 열람일시 및 장소 : 2003년 2월 5일 09:00 ~ 2월 10일 10:00 남동구청 도시정비과

사. 과업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같음합니다.

#### 2. 입찰참가자격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하고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또는 종합처리업 허가를 동시에 득한 업체로서 주된사무소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

○ 자격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때 대표사는 수집·운반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 3. 입찰등록시 제출서류

가.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도급자에 한함)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센터의 전자입찰 기능을 이용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니 입찰서의 제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4. 입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건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서 『인천광역시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인천광역시 예규제419호:2001.1.8)』에 의하여 심사합니다.

나. 본건의 예비가격기초금액은 287,795,610원 입니다.

다.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pm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중 4개를 추첨하여 평균금액으로 결정하고, 15개의 예비가격은 개찰후 입찰장소에서 공개합니다.

마. 가격입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자는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집행후 낙찰제한선 미만(예가대비 86.745%미만)투찰자는 적격심사 부적격자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5. 수행능력평가방법

가. 이행실적평가(15점)

- 심사항목 : 최근3년내 용역계약실적

- 평가요소 : 당해용역대비 최근3년간 용역수행금액

- 등급및 배점 : 1) 100%이상 15점

2) 75%이상 ~ 100%미만 13.5점

- 3) 50%이상 ~ 75%미만 12점
- 4) 25%이상 ~ 50%미만 10.5점
- 5) 0%이상 ~ 25%미만 9점

#### 나. 경영상태평가(15점)

##### 심사항목 등급배점

- 최근년도 부채비율(타인자본/자기자본) 100%미만 4
-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50%이상 4
-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당기순이익/매출액) 2%이상 3
- 최근년도 총자본회전율(매출액/총자본) 200%이상 4

#### 6. 기타유의사항

- 가. 사정에 따라 용역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설계서 과업지시서, 입찰유 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적격심사기준,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나. 입찰보증금및 동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9조 제 3항 및 동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한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다. 입찰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규칙 제44조규정에 의합니다.
-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co.kr](http://www.g2b.c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구 도시정비과(453-2692)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3. 2. 4.

인천광역시남동구도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경리관

##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공고 제2003-2호

## 한방의약품구매전자입찰공고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한방의약품 구매

나. 구입 품명, 규격 및 수량

| 품 명   | 규 격     | 수 량     | 품 명               | 규 격     | 수 량    |
|-------|---------|---------|-------------------|---------|--------|
| 오 적 산 | 43.4g/일 | 15,000일 | 청상건통탕             | 42.8g/일 | 4,000일 |
| 보중익기탕 | 20.5g/일 | 4,500일  | 향사평위산             | 29g/일   | 5,000일 |
| 구미강활탕 | 43.9g/일 | 3,400일  | 한방습포제<br>(밀착포 포함) | 6매/봉    | 7,000봉 |

2. 입찰방법 : 최저가 총액 전자 제한 경쟁 입찰

3. 입찰등록마감일시 : 2003. 2. 16(일) 17:00

4. 입찰일시 및 장소 : 2003. 2. 17(월) 10:00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입찰집행관PC

## 5.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자로, 약사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득하고, 우수약품 유통 관리기준(KGSP)제도에 의한 적격업소로 지정된 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소정의 구비 서류를 갖추어 전자입찰등록을 필한 자에 한한다.

## 6. 입찰참가자격제한

가. 지역제한 : 인천, 서울, 경기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

## 7. 입찰참가신청서류

가. 전자입찰서를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참가신청서에 기재된 입찰보증금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우리 보건소에 귀속됩니다.

## 9. 입찰의 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4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최저가로 낙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추첨에 의하여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1. 낙찰자 통보 :** 입찰실시 후 낙찰자 결정과 함께 낙찰 통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납품일시 및 조건**

가. 납품기한 : 당 보건소 요청(반기별 요청 예정임)일로부터 5일 이내

나. 납품장소 : 당 보건소

다. 납품조건 : 의약품 유효기간은 요청시(반기별)로부터 1년 이상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유의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추가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우리보건소 예산서상 한방의약품 예산액은 삼천구백만원(₩39,000,000.-)입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 할 시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제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보건소 보건행정팀(☎032-453-27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3. 2. 4.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경리관

